

이사회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회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 받는다.

제4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이사회는 그 이사에 대하여 해당업무의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구 성

제5조 (구성) 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가 선임한 업무집행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담당업무 집행상황을 보고한다. 단,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6조 (사외이사) ① 사외이사는 대표이사, 이사, 업무집행이사 등에게 회사의 경영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갖는다.
- ③ 사외이사는 재임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이사회가 의장을 정하지 않거나, 이사회가 정한 의장이不在 또는 有故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동순위의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정한 순서에 의한다.

제 3 장 회 의

제8조 (성립)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제9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매 분기 1회 이상 매 분기 결산일 이후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0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不在 또는 有故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소집통지) ① 이사회 개최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문서, 전자문서, 팩스, 전화 또는 구두로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의 보고)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집행이사)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사항 및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업무집행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4 장 부 의 사 항

제16조 (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정관의 변경
 - 4.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5. 이사, 감사의 보수 한도 결정
 - 6. 자본의 감소
 - 7.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8. 배당 결정
 - 9.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0.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 11.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12.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
- ② 경영에 관한 사항
 - 1.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자기자본의 5% 이상]
 - 2. 신규 시설투자, 증설, 별도 공장 신설 결정 [자기자본의 10% 이상]
 - 3. 유형자산의 취득, 처분 [자산총액의 5% 이상]
 - 4. 중요한 자본도입, 기술도입, 기술이전, 기술제휴에 관한 계약 체결
 - 5. 간합병, 소규모합병의 결정
 - 6. 기타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의 결정 및 변경
- ③ 재무에 관한 사항
 - 1. 신주의 발행 및 실권주 처리

2. 회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의 위임
 3.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
 4. 준비금의 자본전입
 5.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및 소각
 6.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자기자본의 5% 이상]
 7. 채무인수 및 면제 [자기자본의 5% 이상]
 8. 단기차입금 차입 [자기자본의 10% 이상]
 9. 기타 회사의 재무구조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의 결정
- ④ 직제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공동대표의 결정
 3. 업무집행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5.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폐
 6.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보수 결정
 7. 상법 제397조에서 규정한 이사 경업의 승인
 8.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
 9. 이사회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
- ⑤ 기 타
1. 상법 제398조에서 규정한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2. 상법 제397조의 2에서 규정한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에 관한 승인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5.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권한 위임) 제16조의 이사회 결의사항 이외의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제18조 (보고사항)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사회의 결정 및 승인사항의 집행 경과 및 그 실적
- ② 연간 사업계획, 자금계획 등 주요 경영사항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④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 ⑤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⑥ 기타 이사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9조 (긴급집행)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소집 또는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동시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의결권) ① 이사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이사의 의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22조 (의결권 제한) ①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기 타

제23조 (부의절차) ① 이사회 부의안건은 이사회 개최일 5일 전에 이사회 간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간사는 관련 부서장에게 부의안건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이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5조 (간사) ① 이사회는 이사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사회 소집통지 등 이사회 개최의 제반 절차, 의사록 작성, 보존, 열람, 발급 등 이사회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07월 02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07월 02일 제정